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00
------	------

제출일자 : 2022. 7.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0. 19.) 및 시행(2022. 4. 20.)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제8조)
- 나.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고, 구 금고 계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상위 법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라. 상품권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라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구매 건별 구매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4항)

- 마. 판매대행점의 위탁 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바.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5호)
- 사.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아.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8조제4항)
- 자.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7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기관: 서울특별시와 협의함(신탁계약 체결 주체 관련)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2. 6. 08. ~ 2022. 6. 28.): 별도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운영대행사”란”을 ““판매대행점”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를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매·충전·환전을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을 “판매·충전·환전·발행·유통·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권면금액”을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

⑧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상품권의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운영대 행사</u>”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이하 “<u>상품권</u>”이라 한다)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u>판매대 행점</u>”이란 ----- ----- ----- ----- ----- ----- -----.</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③ (생략)</p> <p>④ <u>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상품권의 종류: 선불전자지급수단(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2. <u>상품권의 권면금액: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u></p> <p>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p>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생략)

②·③ (생략)

제7조(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을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

1. ~ 3. (현행과 같음)

4. -----

----- 판매대행점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

-- 판매·충전·환전·발행·유통·시스템 -----

② -----
----- 판매대행점 -----

③ 판매대행점은 -----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

-----.

④ 판매대행점은 -----

구매건별 구매금액-----

-----.

-----.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

<후단 삭제>

-----.
-----.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 설>

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

⑥ ----- 법 제8조제3항-----

-----.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⑧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최성문
연 락 처	2627 - 130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영대행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 선불전자지급수단(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권면금액: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구 소속 공무원, 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사(축제를 포함한다) 개최 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을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및 같은 조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 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이 그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제1148호,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

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